

의안번호	제 598 호
의결 연월일	. . . (제 회)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이상욱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0년 11월 20일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98
----------	-----

발의연월일 : 2020년 11월 20일

발의자 : 이상욱, 박형용, 이숙애,
이의영, 장선배, 허창원,
송미애

1. 제안이유

- 「치매관리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립요양병원 위탁 운영 자격과 갱신 조항의 구체적 반영 및 공립요양병원의 운영 지원 근거와 위수탁의 해지 항목을 추가하고,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치매관리법」에 따라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의 위탁운영 자격, 위탁기간과 위탁 갱신사항, 운영비·의료장비 등의 지원 근거를 규정함 (안 제4조)
- 나. 매년 노인전문병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환자의 관리와 의료서비스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다. 수탁자의 의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7조)
- 라.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마. 공유재산 사용 근거 및 유지관리 의무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 바. 보고와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 사. 노인전문병원 위탁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조례안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0-101호
- 다. 협의 : 보건정책과
- 라. 비용추계 : 붙임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및 치매질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에 따라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이하 “노인전문병원”이라 한다)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10(미평동)에 둔다.

제3조(업무) 노인전문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치매환자의 외래 및 입원진료와 요양
2. 치매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3. 그 밖에 노인 및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전문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절차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노인전문병원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의 위·수탁기간은 법 제16조의3제5항에 따라 5년으로 하며,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노인전문병원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운영비의 적자분 발생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비의 일부와 의료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노인전문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구입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 수탁자는 설계·구입장비 승인 등에 대해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시설공사와 의료장비 구입업무 대행으로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입한 물품은 도지사의 소유로 등기 또는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의료수가) ①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보건복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서) 수탁자는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환자의 관리와 의료서비스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매년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환자의 진료 및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진료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신축·증축·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잃어버리거나 파손할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규정 및 위·수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년 전부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제6조에 따른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안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금은 운영 및 시설에 다시 투자하여야 한다.

③ 위·수탁이 해지된 경우에도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금은 충청북도의 재산으로 한다.

④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은 독립회계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그 공유재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와 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조사 또는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 및 개선 사항이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해지)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의3제7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전문병원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16조의3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수탁자에게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치매관리법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공립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공립요양병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⑤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위탁기간은 그 위탁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공립요양병원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운영하거나 위탁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부도, 파산, 해산, 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 또는 취소, 의료업에 관한 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공립요양병원의 위탁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제6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수탁자에게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의4(치매안심병원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진단과 치료·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이 신청하면 그 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치매안심병원이 치매전문병동을 설치·운영하거나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력·장비를 확충하는 경우에는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치매안심병원 지정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4(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 ① 법 제16조의3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법인
2.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중 신경과전문의, 신경외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하기 위한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야 한다.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치매관리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립요양병원 위탁 운영 관련 내용 등 반영

2. 비용 발생 요인

- 치매전문병동 등의 설치 운영 및 치매관련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인력·장비 확충에 따른 소요 경비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등

3. 관련조문

- 조례안 제4조(운영)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공모사업에 선정될 것으로 고려하여 산출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105,000	0	0	105,000	0	0
장비비	105,000			105,000		

다. 재원조달방안

- 국비(52,500천원), 도비(52,500천원)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연도별 비용추계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0	0	52,500	0	0	52,500
국 비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사업)			52,500			52,500
세 출			105,000			105,000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사업	0	0	105,000	0	0	105,000
재원 조달	0	0	105,000	0	0	105,000
의존 재원	소 계		52,500			52,500
	보조금		52,500			52,5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52,500			52,500
	지방세		52,500			52,5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시·군비						
기 타 (민간 자부담)						

※ '17~'18년도 치매기능보강사업 선정에 따라 향후 5년 주기로 선정될 것으로 추측하고 추계